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관

(개정: 2018/10/1)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명칭)

제3조(소재지)

제4조(사업)

제5조(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제6조(관할 연구회)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정수)

제8조(임원의 선임)

제9조(임원의 임기)

제10조(원장)

제11조(감사)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해임)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5조(임원의 겸직)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제17조(직제)

제18조(직원)

제19조(인력교류)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기본재산)

제21조(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제22조 (운영재원)

제23조(회계원칙)

제24조(사업연도)

제25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제27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제28조(회계감사 등)

제29조(결산서제출)

제30조(외부감사)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제 4 장 부설기관 등

제32(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33(위원회)

제 5 장 보 칙

제34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제35조(정관의 변경)

제36조(규정의 제정)

제37조(해산)

제38조(공고)

부 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 1. 7)(개정 2007.03.27)(개정 및 조 순서 변경 2018.10.1)

제2조(명칭)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영문으로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약칭 KAERI)로 표기한다.(개정 1990.4.9)(개정 2017.05.24)(개정 및 조 순서 변경 2018.10.1)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며, 제6조에 따른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90.9.3)(개정 2007.03.27)(개정 2017.05.24) (개정2018.10.1)

제4조(사업)연구원은 제1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03.27)(개정 2018.10.1)

1. 원자력 기초·기반기술 연구·개발
2. 원자력정책연구 및 원자력기술정보의 수집
3. 원자로·핵연료 주기 연구·개발 및 원자력 이용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
4. 원자력설비 및 환경 안전성연구·개발
5.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연구·개발
6. 원자력관련 대형연구시설 개발·운영
7.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개정 2014.12.29)
8.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개정 2014.12.29)
9.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개정 2014.12.29)
10.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4.12.29)

제5조(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 (개정 2018.10.1)

② 대학원대학의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24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0.1)

③ 연구원은 대학원대학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교직원 임면 등 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학원대학의 장과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6조(관할 연구회) 구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지도·관리를 받는다. (개정 2008.3.25)(개정 2014.8.1)(개정 2018.10.1)

##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정수) ① 연구원에 원장 1명과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8.10.1)

② 원장 및 감사는 상임(常任)으로 한다.(개정 2018.10.1)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6.17)(개정 2014.8.1)(삭제 2017.9.8)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4)(개정 2018.10.1)

④ 원장이 임기만료,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17)(개정 2014.8.1)(개정 2017.9.8)

⑤ 원장은 원장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금전적 대가는 받을 수 없다. (신설 2017.5.24.)

⑥ 원장은 연구원에 관한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고,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임기만료, 권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17)(개정 2018.10.1)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5.24.)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8.10.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7.05.24.)(개정 2018.10.1)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연구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7.05.24.)(개정 2018.10.1)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10.1)
5. 직무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18.10.1)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겸직) 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18.10.1)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① 연구원의 임·직원은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를 좇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

② 연구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10.1)

제17조(직제)(조 순서 변경) 원장은 연구원의 직제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제18조(직원)(조 순서변경)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19조(인력교류)(조순서 변경) 원장은 법 제32조 등 인력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개정 2018.10.1)

###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기본재산)(조 순서 변경)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1)
3.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개정 2018.10.1)

제21조(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조 순서 변경)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차, 무상양수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개정 2018.10.1)

제22조(운영재원)(조 순서 변경)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자체수입금, 차입금,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8.10.1)

제23조(회계원칙)(조 순서 변경)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연도)(조 순서 변경)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10.1)

제25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조 순서 변경) 연구원은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24)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조 순서 변경) 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5.24.)(개정 2018.10.1)

②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사업의 목표, 성과,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5.24.)(개정 2018.10.1)

제27조(출연금의 지급신청)(조 순서 변경) 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5.)(개정 2013.3.27.)(개정 2017.05.24.)(개정 2017.9.8)

제28조(회계감사 등)(조 순서 변경) ①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원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연구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서제출)(조 순서 변경) 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5.24.)(개정 2018.10.1)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7.05.24.)(개정 2017.12.29)
2. (개정 2017.05.24.)(삭제 2017.12.29)
3. (개정 2017.05.24.)(삭제 2017.12.29)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개정 2018.10.1)

제30조(외부감사)(조 순서 변경)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조 순서 변경)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제 4 장 부설기관 등

제32조(부설기관 등의 설치)(조 순서 변경) 제3조에 따른 부설기관, 분원, 본원 외 조직 등의 설치 및 폐쇄는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을 사전에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24.)

제33조(위원회)(조 순서 변경) 연구원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10.1)

## 제 5 장 보 칙

제33조(비밀엄수의 의무) (삭제 2018.10.1)

제34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연구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 (개정 2017.05.24.)

제35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개정 2017.05.24.)

제3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10.1)

제37조(해산)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 해산한다.(개정 2017.05.24.)

1.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원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25.)(개정 2013.3.27.)(개정 2017.9.8)

③연구원이 해산된 때에는 남은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제38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 부 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 ②종전 연구소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를 이를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 ③이 정관 이전에 연구소 명의로 처리한 사항은 연구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연구소의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연구소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13.3.23.)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동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동법률이 시행된 날('14.6.29.)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9.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0. 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2018년 9월14일부터 적용한다.